



## 대진대학교 -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학생임상실습 협약서



대진대학교(이하 “학교”)와 서울특별시 북부병원(이하 “병원”)은 대진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의 효율적인 실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학생임상실습 협약을 체결한다.

### 제1조 (목적)

본 협약은 학교와 병원간의 협력을 통하여 간호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숙련도를 높이고 포괄적인 간호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훌륭한 간호사를 양성함과 더불어 학교와 병원의 상호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 (협약내용)

1. 학교는 효율적인 실습과 병원 방침의 준수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  - 가. 학교는 실습생의 병원의 방침과 규정 및 준수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한다.
  - 나. 학교는 실습기간 중 실습담당 지도교수를 파견하여 실습 및 집담회를 지도한다.
  - 다. 실습지도와 운영에 관하여 실습 전, 후에 병원 담당자와 실습 협의를 갖는다.
  - 라. 실습에 관련된 제반 비용은 학교가 부담한다.
  - 마. 실습기간에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는 병원이 책임지지 않는다.
2. 병원은 효율적인 학생실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과 협력을 제공한다.
  - 가. 병원은 학생의 실습을 위해 필요한 장소와 물품사용을 허용하며 학생의 실습을 위해 최대한 협조한다.
  - 나. 병원은 학생의 임상실습을 지도하며 학생의 실습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며 학교에 통보한다.
  - 다. 병원은 실습생이 지켜야하는 병원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학교와 사전 협의하며 전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### 제3조 (협조 및 의무사항)

1. 학교와 병원은 협약에 대해 신의·성실의 원칙에 따라 수행하며, 적극 협조한다.
2. 실습인원, 기간 및 실습부서에 대한 학교의 실습의뢰 요청에 대해 병원의 승낙을 얻어야 하고, 병원의 조건 변경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학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.

### 제4조 (협약기간, 기타)

1. 본 협약은 양 기관의 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.
2. 본 협약이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의하며, 필요시 별도 협의로 정한다.
3. 이상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고, 양 기관의 장이 서명 후 1부씩 보관한다.

2022. 04. 01.



대진대학교

총장 임영문



서울특별시 북부병원

병원장 윤진

